

귀 학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1. 귀 학회의 회원인 본인 이준행은, 소화기내시경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 교육 및 내시경기기와 술기의 개발로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귀 학회의 목적(학회 회칙 제 3 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의사로서 또한 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먼저, 귀 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개별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의견을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징계사유가 되는 교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면 해당 교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은 귀 학회 회칙에 반하여 불법적인 교육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또한, 본인은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문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히 토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귀 학회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귀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교육을 함으로써 귀 학회의 위상을 훼손하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4. 참조사항으로 기재된 일본 후생성 명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설사 일본 후생성에서 그러한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학회가 그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회원 자격 정지 징계 절차를 취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4 년 9 월 10 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원 이준행